

특약 개정 대비표

- 1. 약관명: 『(지역장려금) 하나통장』 특약
- 2. 변경 시행일 : 2025년 7월 1일
- 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- 4. 주요 변경 내용 : 급여인정 기준 확대

<신규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「(지역장려금) 하나통장」특약 제1조 ~ 제6조 <생 략> 제7조 우대금리 ① <생 략> ②급여이체우대금리는'(지역장려금) 하나통장'으로 <u>급여(주1)</u>가 입금된 경우 다음달에 제공합니다. (주1) 급여 입금 인정기준 : <u>건당 50만원 이상 타인으로부터 입금시 1~3 중 한가지 이상 충족</u> <u>1.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(급여, 월급, 연봉, 상여, 보너스,PAY, SALARY, 등록직장명 등)를 포함하여 입금된 자금</u> <u>2. 사전 지정한 급여일 및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(단, 비급여성 거래 제외)</u> <u>3. 회사에 의한 '급여코드'로 입금된 경우</u> ③ <생 략> 제8조~제9조 <생 략> 부 칙 <u>이 특약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.</u> <u><신 설></u>	「(지역장려금) 하나통장」특약 제1조 ~ 제6조 <좌 동> 제7조 우대금리 ① <좌 동> ②급여이체우대금리는'(지역장려금) 하나통장'으로 <u>급여(주1)</u>가 입금된 경우 다음달에 제공합니다. (주1) 급여 입금 인정기준 : <u>1.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*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(ex. 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너스, SALARY, PAY 등/ 등록직장명)</u> <u>2. 회사에 의한 '급여코드'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</u> <u>3. 손님이 '급여일'을 지정(등록)하고,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</u> <u>※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금, 보험료 등)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</u> <u>※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</u> ③ <좌 동> 제8조~제9조 <좌 동> 부 칙 <u>1.이 특약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.</u> <u>2.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5년 0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</u>	급여 인정 기준 확대 부칙추가